

special offers

클릭 하셔서 다양한 혜택의 스페셜 관측 프로그램을 확인 하십시오

LEGAL

LOCATION 홈 > 뉴스 > 이민/비자

이메일 | 프린트 | 기사목록 | -가 +가 | 내 블로그에 담기

- 이민·비자
- 이민/비자
- 본기사에 대한 댓글
- 0 개 -

[이민 Q&A] 임시영주권자가 이혼하면 체류신분은... [LA중앙일보]

이동찬/변호사

기사입력: 01.04.10 20:28

2010년 세금 보고 정보 & CPA 시험 정보 무료 공개 강의

2010년 세금 보고 방법 및 절세 공제 방안 확 바뀐 2011년 CPA 시험 정보

1월 9일 LA | 1월 23일 Seattle! | 바로가기

미주 투어 강의, 절대 놓치지 마세요!

△문= 저는 미국 시민과 결혼을 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 다. 그러나 임시영주권을 받고 1년 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 다. 저는 미국에 있는 유학생과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영주권에 문제가 있는지 혹 저를 통해서 새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.

▼답= 결혼을 통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으신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조건을 해제하는 청원서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조건을 해제하기 전에 이혼을 하신다면 면제를 신청하셔야 정식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그리고 면제를 신청하시면 이민국에서 결혼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자료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. 귀하께서는 면제를 허락받으시면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귀하의 새 배우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곧바로 초청하거나 혹은 귀하께서 시민권을 획득하신 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이민법에 의하면 영주권자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내에 이혼을 하고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다면 오직 전 결혼이 사기결혼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야지 이민청원서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설사 이민청원서를 승인받더라도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날짜에서 대략 4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반면 귀하께서 정식영주권을 받으시고 3년 정도 기다리셨다가 시민권을 획득하신다면 새 배우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그 즉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▷문의:(213)291-9980

- ▶ 대지진에 취약한 세계 도시...도쿄 11위, 1위는?
- ▶ 불법체류자였던 한인, 美 쇼트트랙 대표 발탁
- ▶ [car] 중고차 사고팔판 여기서 하세요.
- ▶ [Ask미국] ssi를 받고 있는데 재산이 증가하면?

- ▶ 한인 고교생 '교장 초상화 풍자' 그림 논란
- ▶ '가치 있는 美 대학' 2위 하버드...1위는?
- ▶ 프로모션 없이도 손님 몰리는 식당들의 비결
- ▶ [Blog]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황홀한 일출과 일몰

뉴스홈으로 맨위로

이메일 | 프린트 | 기사목록 | 내 블로그에 담기

나도 한마디...!

•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.

• 감정표현: 

공유하기

HOT PHOTO



이 곳이 지상낙원~



우유 한잔 하실래요?



풍만하던 가슴 어디에?






美유명인 엽기사진들



이삿집의 금메달

· YELLOW PAGE 옐로우페이지 광고상

 이민법 전문 임상우 변호사	 간호 자격증 The Walter Jay Institute	 스테이트 팜 알렉스 정 가든 그로브	 스테이트 팜 마이클 김 라 팔마	 스테이트 팜 헤더 정 토렌스
--	--	--	---	--

